한민족어문학회 회칙

제1장 명칭 및 목적

제1조 (명칭)

본 학회는 '한민족어문학회'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학회는 국어국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사업 및 부서

제3조 (사업의 종류)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1. 학회지와 연구서 발간
- 2. 학술발표회 개최
- 3. 차세대 학자 육성 사업
- 4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4조(학회지 발간)

본 학회는 연 4회 이상 학회지 『한민족어문학』을 발간하며,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 (학술발표회)

학술발표회는 매년 1~2회 개최한다.

제6조 (부서)

본 학회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부서를 두며,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1. 총무부
- 2. 연구부
- 3. 편집부
- 4. 섭외부
- 5. 정보부

제3장 회원

제7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- 1. 본 학회는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, 기관회원을 둔다.
- 2. 정회원은 국어국문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
- 3. 명예회원은 국어국문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.
- 4.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.
- 5. 기관회원은 공공기관 및 도서관, 단체 등으로 한다.

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1.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, 총회에서 의결권· 선거권·피선거권을 갖는다.
- 2. 명예회원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.
- 3.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고,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다.
- 4. 기관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,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받는다.

제9조 (회원의 제명)

- 1.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2. 정회원으로서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단,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
제4장 임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

- 1. 본 학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연구이사, 편집이사, 섭외이사, 정보이사, 지역이사, 평의 원 및 감사를 둔다. 필요한 경우 이사를 도울 수 있는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- 2.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, 부회장 2명 이내, 이사 70명 이내(평의원 제외), 감사 2명으로 구성 한다.
- 3. 평의원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선임 방법 및 임기)

- 1.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2. 부회장, 총무이사, 연구이사, 편집이사, 섭외이사, 정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결원의 경우,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

- 1. 회장: 학회를 대표하고,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이사: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,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 - 1) 총무이사: 학회의 제반 업무 진행, 조정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.
 - 2) 연구이사: 학회의 각종 연구, 학술대회 개최 및 진행을 담당한다.

- 3) 편집이사: 학회 관련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한다.
- 4) 섭외이사: 학회의 기금 확보 및 대외 관계 사업을 담당한다.
- 5) 정보이사 : 학회의 제반 정보 관리 및 교류를 담당한다.
- 6) 지역이사: 각 지역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7) 평의원: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8) 감사: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5장 총회

제13조 (총회의 기능)

- 1.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
- 2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4. 기타

제14조 (총회의 소집)

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

- 1.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.
- 2.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
제15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
- 1.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.
- 2.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6장 이사회

제16조(이사회의 소집 및 기능)

-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본 학회 운영의 당면 문제 심의
 - 2. 예산 및 결산 심의
 - 3. 편집위원회 규정,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학술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7조 (이사회의 의결 정족수)

- 1. 이사회는 재적 인원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.
- 2.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장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

제18조 (편집위원회의 구성)

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19조 (연구윤리위원회 구성)

본 학회는 회원들의 윤리 규범 준수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, 이와 관련 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8장 자산 및 회계

제20조 (재정)

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.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
- 2. 찬조금 및 후원금
- 3. 그 밖의 사업 수익금

제21조 (회계 연도)

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부칙>

- 1. 본 회칙은 197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<부칙>

- 1. 본 회칙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며, 그 이전의 회칙은 폐기한다.
- 2. 본 회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단의 의결에 따른다.